##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79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김태선·복기왕·이용우

정준호ㆍ허 영ㆍ이훈기

김태년 • 박홍배 • 이학영

이기헌 • 윤종군 • 박 정

김주영 · 김영배 · 박균택

김남근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로 잡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과다한 기간 소요 등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관계를 폭넓 게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EU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일하 는 사람들의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의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 호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조건 및 고용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안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업무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 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 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 일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업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임금·복리후생·해고 등 해 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문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은 사용자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 제2조(정의) ①                        |  |  |  |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  |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 1                                |  |  |  |
|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     |                                  |  |  |  |
| 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                                  |  |  |  |
| 하는 사람을 말한다. <후단     | <u>이 경</u>                       |  |  |  |
| <u>신설&gt;</u>       | 우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                  |  |  |  |
|                     | 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  |  |  |
|                     | 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                  |  |  |  |
|                     | 되,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  |  |  |
|                     |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u> &lt;신 설&gt;</u> | 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br>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 |  |  |  |
|                     |                                  |  |  |  |
|                     | 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  |  |  |
|                     | 받지 아니하는 경우                       |  |  |  |
| <u>&lt;신 설&gt;</u>  | 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  |  |  |
|                     | 업무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  |  |  |
|                     |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                    |  |  |  |
|                     | <u>진 경우</u>                      |  |  |  |
| <u>&lt;신 설&gt;</u>  | 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  |  |  |
|                     | <u>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u>             |  |  |  |
|                     | <u>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u>             |  |  |  |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3. ~ 9. (생 략) ② (생 략)

|   | <u>름과</u> | 계산의  | 으로   | 독립적  | 으로  |
|---|-----------|------|------|------|-----|
|   | 형성:       | 된 거리 | 대, Q | 일 또는 | 는 사 |
|   | <u>업에</u> | 종사히  | }는 : | 경우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경우   | 근로  |

- 3. ~ 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